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건축법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생략)</p> <p><신설></p> <p><신설></p> <p>13. ~ 19. (생략)</p> <p><신설></p> <p>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 9. (생략)</p> <p>11. <u>노유자</u>(<u>노유자</u>: 노인 및 어린이)시설</p> <p>12. ~ 28.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① - - - - -</p> <p>- - -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3. ~ 19. (현행과 같음)</p> <p>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p> <p>② - - - - -</p> <p>-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1. <u>노유자</u>(<u>老幼者</u>: - - - - -)</p> <p>12. ~ 28.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p> <p>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p>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p>하는 바에 따른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p> <p>⑫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p> <p>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p> <p>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 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p>

	<p>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년 <p>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p>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p> <p>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2.3]</p>
<p>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생략)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 - - -
- - - -
- - - -
- - 도지사는 - - - -
- - - -
- - - -
- - - -
- - -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 ④ (생략)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 8. (생략)
-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 - 시·도지사 및 시장 - - - -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 9. - - - -
- - - -

<p>2014.1.14]</p> <p><신 설></p>	<p>- 사항</p> <p>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4]</p>
<p>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 ④ (생략)</p> <p>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4]</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p> <p>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p> <p>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4]</p>
<p>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 설></p>	<p>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 - - - -</p> <p>- - - - -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p>

<p>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2억 원 ----- .</p>
<p>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신설></p> <p>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u>제25조제6항</u>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p> <p>3. (생략)</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u>제25조제1항</u>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p> <p>나. <u>제25조제1항</u>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p> <p>5. <u>제25조제2항</u>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p> <p>6. <u>제25조제5항</u>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신설></p> <p>7. <u>제35조</u>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p> <p>8. (생략)</p> <p><신설></p> <p>9. (생략)</p> <p>9의2. <u>제50조의2제1항</u>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10. <u>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u></p> <p><신설></p>	<p>제110조(벌칙) -----</p> <p>----- 1억원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제13조제5항</u>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p> <p>2. ----- ----- <u>제25조제7항</u>-----</p> <p>3. (현행과 같음)</p> <p>4. -----</p> <p>가. <u>제25조제1항</u>-----</p> <p>나. <u>제25조제1항</u>-----</p> <p>5. <u>제25조제3항</u>-----</p> <p>6. <u>제25조제6항</u>-----</p> <p>6의2. <u>제27조제2항</u>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p> <p>7. <u>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u>-----</p> <p>8. (현행과 같음)</p> <p>8의2. <u>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u>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p> <p>9. (현행과 같음)</p> <p>9의2. ----- ----- 공사시공자 <후단 삭제></p> <p>9의3. <u>제48조의4</u>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u>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u></p> <p>10. <u>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u></p>

<p>11. · 12. (생략)</p>	<p>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p> <p>11. · 12. (현행과 같음)</p>
<p>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p> <p>2.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4. ~ 7. (생략)</p> <p><신설></p>	<p>제111조(벌칙) - - - - -</p> <p>- - - - - 5천만원 - - - - -</p> <p>.</p> <p>1. - - - - -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 - - - -</p> <p>-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p> <p>3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p> <p>4. ~ 7. (현행과 같음)</p> <p>8. 삭제 <2009.2.6>[시행일:2017.2.4] 제111조 각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3호의2</p>
<p>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4.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p> <p><신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p> <p>2. ~ 4. (생략)</p> <p>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p> <p>6. ~ 9.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신설></p>	<p>제113조(과태료) ① - - - - -</p> <p>- - - - -</p> <p>-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5.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p> <p>② - - - - -</p> <p>- - - - -</p> <p>1. 제25조제4항- - - - -</p> <p>-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6. ~ 9. (현행과 같음)</p> <p>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p>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